

##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6. .
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(안 제5조)

-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행사 시 의전상 예우
- 향토지 빨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 공적기재
-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
#### 나. 보훈단체의 예산지원(안 제6조)

-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
-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
-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
#### 다. 복지지원 등(안 제7조)

-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
-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

### 3. 근거법규

가.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국가보훈처 조례 권고안

### 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5. 2. ~ 5. 23.(의견 없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희생 · 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 ·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
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

**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보훈단체"라 한다)로 한다.

**제4조(구민의 책무)** 모든 구민은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**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 · 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국경일 ·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· 공헌자의 공적 기재

- 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- 5.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- 6. 호국·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·공헌자의 업적 선양

**제6조(보훈단체 예산지원)**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
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
**제7조(복지지원 등)**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
- 2. 국경일·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

**제8조(민간의 참여조성)**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**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,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82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
에 관한 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6. 7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6. 8(수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6. 20(월)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(안 제5조)
  -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행사 시 의전상 예우
  - 향토지 빨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현자 공적기재
  -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  -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
- 보훈단체의 예산지원(안 제6조)
  -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
  -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
  -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
- 복지지원 등(안 제4조)
  -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
  -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

#### 4. 근거법규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##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진부호)

-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구민의 책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, 모범 보훈대상자 포상, 각종 보훈문화 행사지원 및 보훈단체 예산지원 규정, 부칙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제정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